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4. 6.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 개정사유

- 사용허가시 관장의 재량범위를 최대한 제한
-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신설, 폐지 및 현실화
- 영화 및 흥행성 대중공연 유료공연시 사용료 및 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 보장
-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 관리방법 개선

□ 주요골자

- 사용허가(제3조제2항제3호)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
- 부대시설사용료 신설, 삭제 및 현실화(제5조제1항【별표】)
 - 항 목 : 총 23종 ⇒ 28종 (신설 9종, 삭제 4종)
 - 현 실 화 : 음향반사판외 3종
 - 부대조건 : 신설(5), 삭제(2), 변경(1)
-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이 있는 유료공연의 사용료 인하 및 징수 보장(제5조제2항)
 - 사용료 :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30
⇒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
 - 사용료 징수 보장 신설 :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료후 정산 납부
 - 보증금 신설(제8조제1항) : 제5조제1항의 사용료 산출금액
-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관리(제11조제5항) : 소각 ⇒ 5년간 보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옥내집회”를 “공익성 공연, 전시”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하며,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점인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료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제1항중 “사용료”를 “사용료(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

【별표】 중 부대시설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별		단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 형	1회	30,000원	○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계산
	소 형	"	20,000원	
	외산스타웨인	"	50,000원	
전자오르간		"	40,000원	○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무대조명	대 공 연 장	시간당	40,000원	
	소 공 연 장	"	20,000원	
조명 효과장비	Pin Light	1회	10,000원	○ Pin Light, 프로젝트는 사용자 운영 ○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유·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	30,000원	
	무선마이크	1회/1ch당	10,000원	
	인 터 컴	1회	10,000원	○ 유·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녹음(카세트테이프)	"	10,000원	
	유선마이크	1회 기본3대 추가대당	15,000원 3,000원	
	DAT	1회	20,000원	○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CD	"	10,000원	
	MD	"	20,000원	
	전시실 방송장비	"	50,000원	
냉 난 방	냉 방	시간당	연료시가의 10% 가산	○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난 방	"		
영 사 기	35/70mm	"	20,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20,000원	
	회 전 무 대	"	20,000원	
	고 무 깔 판	"	50,000원	
	덧 마 루	"	20,000원	
	승 강 무 대	"	20,000원	
프로젝트	중 앙	"	100,000원	
	좌 우	1회/대당	50,000원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스 모 그 기		"	1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옥내집회</u> 및 행사 ③ (생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u>공익성 공연, 전시</u>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 (생략) ② <u>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u> ③ ~ ⑥ (생략)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을 사용료로 하며,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점인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료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u> <u>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공기관은 제외) 소정 <u>사용료</u>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은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보증금) ①- - - - - - - - - - <u>사용료(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u>-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료) ①~④ (생략) ⑤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u><단서신설></u> ⑥~⑦ (생략)	제11조(관람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u>다만,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u> ⑥~⑦ (현행과 같음)

부대시설 사용료

현행				개정안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대형	1회	30,000원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정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함		----	--	----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소형	1회	20,000원		----	----	--	----			
	외산스타웨인	1회	50,000원			----	--	----			
전자오르간		1회	40,000원		-----		--	----	○.----- ----- -- ○.----- ----- -----		
무대조명	대공연장	시간당	40,000원		----	----	--	----			
	소공연장	시간당	20,000원		----	----	--	----			
<신설>					조명 효과장비	Pin Light	1회	10,000원			

현행				개정안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원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은 무료로함	-----	-----	-----	30,000원	○. <삭제>
	무선마이크 (8ch)	1회	10,000원			무선마이크	1회/1ch당	---	
	무선인터컴 (6조)	1회	10,000원			인터컴	---	---	
	녹음 · 릴	1회	30,000원	<삭제>			○. <삭제>		
	·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원	녹음 (카세트테이프)		---		---	
	<신설>			유선마이크		기본3대 1회 추가대당		15,000원 3,000원	
DAT				1회		20,000원			
CD				1회		10,000원			
MD				1회		20,000원			
			전시실 방송장비	1회	50,000원	○. Pin Light. 프로 젝트는 사용자 운영			
냉난방	냉방	시간당	연료시가의 10%가산	○. <신설>	-----		---	---	---
	난방	시간당				---	---	---	

현행				개정안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고	
영사기	70 m/m	시간당	40,000원	○. <신 설>	영사기	35/70 mm	시간당	20,000원	○.피아노 추가 조율 비는 사용자 부담	
	35 m/m	시간당	20,000원							
	16 m/m	시간당	10,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단	1회 작동	20,000원	○. <신 설>	-----	-----	1회	-----	○.유·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회전무대	1회 작동	20,000원				1회	-----		
	스라이딩무대	1회 작동	20,000원				<삭 제>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고무갈판	1회 당	30,000원				-----	1회	50,000원	
	덧마루	1회 당	10,000원				-----	1회	20,000원	
	<신 설>						승강무대	1회	20,000원	
	<신 설>						프로젝트	중앙	1회	100,000원
			좌우	1회/대당	50,000원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 <신 설>	-----		--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		1회	10,000원		-----		--	-----		